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단5007897 판결 [구상금, 손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9,047,288원 및 그 중 32,518,916원에 대하여는 2020. 10. 15.부터, 26,528,372원에 대하여는 2020. 11. 12.부터 각 2021. 2. 5.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0. 6.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3. 접수 제1497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20. 6. 2.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3. 접수 제149798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들은 2020. 8. 7.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9,047,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이혼하면서 20년간 이룩한 재산을 분할받은 것일 뿐 원고와 피고 A과의 채권채무관계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이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 A,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협의이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주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G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9세대)

1층 14.34㎡

2층 ~ 5층 각 96.76㎡

6층 95.85㎡

옥탑1층, 옥탑2층 각 15.12㎡(연면적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C 대 579.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1.5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79.3분의 44.835

